

# 공 고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의  
규정에 의하여 정읍지역자활센터 2025년도 세입·세출  
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▷ 공고 기간 : 2025년 1월 9일(월)부터 ~
- ▷ 공고 장소

- 정읍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정읍시청 홈페이지 게시판

2025. 1. 9.

정 읍 지 역 자 활 센 터 (직인생략)

##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 총칙

제1조 정읍지역자활센터의 2025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.

제2조 세입·세출 예산총액은 3,656,510천원으로 한다.

제3조 세입 및 세출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일반회계

세 입		세 출	
내 용	예산액(천원)	내 용	예산액(천원)
계	3,656,510	계	3,656,510
보조금(센터운영비)	498,201	사무비(인건비)	483,292
보조금(자활근로사업)	2,377,618	사무비(업무추진비)	548
사업수입(자활근로 매출수입)	713,950	사무비(운영비)	18,567
후원금수입	18,684	교육사업비	3,000
자부담수입	44,221	재산조성비	0
전입금수입	1,436	자활근로(인건비)	1,981,449
기타잡수입	2,400	자활근로(사업비)	396,169
		예비비및기타	3,336
		후원사업비	11,978
		자부담사업비	44,221
		자활근로 매출지출	713,950

제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보조금, 지정후원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 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(또는 시설의 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제6조 기타 필요한 사항

1) 회계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.

2025. 1. 6.

정읍지역자활센터장(직인생략)